

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단체명	전화번호
	주소	법인등록번호 (법인의 경우)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

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일반현황

회원	제조 / 수입업자수	/	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수	개소
	파쇄재활용업자수 (용량)	(톤/일)	폐가스류처리업자수 (용량)	(톤/일)
	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수 (용량)	(톤/일)		
재무의 건전성	자산 (백만원)	부채 (백만원)	자본 (백만원)	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설립목적, 사업 범위, 법인의 정관 1부 2. 자동차 제조·수입업자,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, 파쇄재활용업자,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,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.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.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확인	→	결재	→	인가증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 (기후에너지환경부)		처리기관 (기후에너지환경부)		처리기관 (기후에너지환경부)		신청인